

이달의 초점

개인의 행태변화 유도를 위한 현금지원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출산 결정요인과 출산장려금의 영향

|하슬앞|

가구 소비지출에 대한 아동수당의 영향

|이아영|

근로장려세제의 노동 공급에 대한 영향

|박소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출산 결정요인과 출산장려금의 영향¹⁾

Baby Bonus and Fertility Decisions: What Drives Parents' Choices?

하슬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장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이 글에서는 가구의 생애 소득·소비 전망에 기초한 출산 결정 과정에서 출산장려금과 기타 주요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과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출산장려금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나 그 규모가 다른 요인들에 비해 매우 작아 임신과 출산처럼 생애 전반의 소득·소비 흐름을 고려해야 하는 의사결정은 단기적이고 소규모의 무조건 현금지원만으로는 변화시키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부부가 자녀의 '질'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기반이 중요한 만큼 출산 장려 정책은 단기적 현금수당보다 신혼부부 주거 지원이나 청년 일자리 지원과 같은 장기적·구조적 대책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1 들어가며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각 지자체에서 현금지원사업이 주요한 정책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규모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출산 장려를 위한 대표적 수단으로서 출산장려금의 경우 2024년

기준 지자체의 해당 사업 예산이 총 2590억 원가량이었다(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2025). 그럼에도 출산율이 뚜렷한 전환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 관점에서 효과에 대한 점검과 적정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출산장려금은 직접 현금지원(monetary subsidy)

1) 이 글은 하슬임, 이아영, 박소은, 이상영, 안수인, 박금령. (2025). 개인의 행태변화 유도를 위한 현금지원정책의 효과와 시사점에 관한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제3장의 일부 내용을 발췌해 보완·정리한 것이다.

으로 가계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일조할 수 있지만, 해당 사업이 과연 당초에 설정한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즉 장려금이 실제로 부부의 출산 의사를 바꾸어 출산율을 제고하는 효과를 보이는지, 아니면 기존의 출산 의사가 있던 가구의 출산 아동에 대한 물질적 지원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이 연구의 목적은 출산장려금이 가구의 출산 결정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즉 이론적으로 출산 여부와 출산 시기를 결정하는 요인을 살펴보고, 출산장려금이 이러한 요인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실제 출산 결정에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정책의 효과와 한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2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녀를 일종의 재화로 간주하여 그 수요를 결정하는 경제학적 프레임워크로서 Gary Becker의 일련의 연구들에 따르면 개인의 효용은 자녀와 그 외 재화의 소비를 통해 결정된다. 즉 양육비와 일반 소비는 경쟁적 관계에 있기에 출산은 단기적 소비 감소를 감수하고 장기적으로 자녀를 통해 효용을 얻기 위한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자녀를 통한 효용은 그 '양'뿐만 아니라 '질'에 의해 영향을 받고, 부모는 생애 예산 제약하에서 자녀의 수를 줄이면 그에 대한 지출을 늘려 질을 높일 수 있다(Becker, 1993). 특별히 도시나 고소득 국가들에

서 소득수준과 출산율이 반비례하는 현상에 대해 기존에는 해당 지역에서 양육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설명되기도 했지만, Becker는 이를 소득에 따른 자녀의 수와 질 간의 관계가 자녀 양육 비용을 상승시킨 주요한 원인이라고 했다. 즉 자녀 수에 대한 소득 탄력성에 비해 자녀의 질에 대한 소득 탄력성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비용과 편익의 관점에서 부부는 생애 소득·소비 전망에 따라 출산할 자녀 수와 출산 시기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에게 출산은 일종의 소득 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때 아내의 출산 전 임금 수준과 노동시장 지위의 안정성 보장 여부는 출산에 따른 기회비용으로 주요한 고려 요인이 되고 더불어 배우자의 소득(임금)수준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출에는 기본적인 생활비 외에 의료비, 교육비가 대표적인 것인데, 이것이 자녀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특별히 자녀의 질에 대한 투자로 높은 사교육비는 한국의 낮은 출산율의 대표적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양육 여건 차원에서 가구의 주거비 부담 또한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거 불안정성은 생애 소득·소비 전망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출산 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주택 가격 상승이 혼인 지연, 출산 지연·포기로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한정된 현상이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상 연구에서도 출산율에 대한 주거비 부담의 부정적 영향이 확인된 바 있다(Fluchtmann et

al., 2023).

한편 지자체의 출산장려금은 출산에 따르는 대표적 공적이전소득으로 부부의 생애소득 전망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규모와 지급 기간 등 조건에 따라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즉 생애소득 전망에 영향을 미칠 만큼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일시적 소득 충격은 출산 결정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국내 실증 연구들에서도 장려금 수준이 비교적 높을 경우에만 해당 지역에서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철희, 이소영, 2022; 최혜진 외, 2023).

출산장려금의 효과에 대한 논쟁 중 대표적인 것은 장려금이 가구의 의사결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추가 출산을 하도록 유도한다기보다는 단지 출산 시점이 조정된 영향일 수 있다는 것이다(Lain et al. 2009). 국내 연구에서 첫째 자녀 출산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크고, 출생 순위가 내려가면서 효과가 줄어드는 것은 이러한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박창우, 송헌재, 2014; 이철희, 이소영, 2022). 즉 평균적으로 가구의 생애소득 전망에 따른 생애(최적) 총 자녀 수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면(예를 들어 2~3명), 그 한계를 초과하는 자녀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더 큰 규모의 소득 증가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대개 지역(지자체)을 단위로 하는 실증분석에서 장려금이 출산율 증대에 일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것이 출생아 수의 순증으로 인한 것인지, 혹은 단순히 경제적 인센티브에

따른 인구 이동의 효과인지는 분명치 않다. 예를 들어 박소은 외(2024)에서는 시·도 간 순전입률이 지역별 출산지원금과 일정한 관계를 보여 지역적 차이에 기반한 패널 분석에서 출산지원금과 출산 간의 (작은 수준에서) 긍정적 관계가 사회적 인구이동에 의한 것임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한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출산장려금 확대와 출산율 증가는 역(逆)인과관계를 가질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 추진이나 예산 배분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선호를 반영하게 되는데, 지역 주민 구성에 따라 출산정책의 규모와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이유진 외(2020)에 따르면 변수 간 내생성을 고려하여 동시방정식을 추정한 결과 출산장려금이 출산율이나 출생아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고, 오히려 출산율이나 출생아 증가율이 출산장려금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국내 실증 연구들은 주로 지자체 단위에서 장려금 수준과 출산율 간의 관계를 추정해 왔다. 그러나 지역 단위 분석에서는 개인과 가구의 생애소득 전망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에서 출산장려금의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전술한 인구이동이나 역인과관계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쉽지 않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가구 단위 분석을 통해 출산 결정이 임신 당시에 전망되는 생애소득 프로파일에 기초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가구의 주요한 특성과 출산장려금의 효과를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3 지자체 출산장려금의 효과 분석

가. 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는 가임기 유배우 여성의 출산 결정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노동패널 3~25차 자료(2000~2022년)를 활용하였다. 종속변수는 15~49세의 가임기 유배우 여성의 연간 출산 여부 및 현재 자녀 수로, 자녀 출산 시기와 출생 순서는 각 가구원의 출생 연도를 이용해 파악하였다. 조사 기간 중 출산이 1회 이상 관측되면서 당시 가구 및 개인의 상태가 조사된 관측치를 분석에 포함하고, 무자녀 가구 또한 비교 대상에 포함하였다.

출산에 대한 주요 변수의 정량적 효과를 정확히 추정하기 위한 이상적인 방법은 생애 출산을 모두 마친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각 출산 시기에 가구와 개인의 상태 변수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추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조사 자료의 한계로 인해 이러한 패널을 구축하기는 쉽지 않기에 가급적 추정에 편향을 초래할 수 있는 관측치는 제외하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있지만 출산이 완료된 후 조사에 참여하기 시작하여 출산 당시 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재혼 등 혼인상태에 변화가 있는 가구도 제외하였다. 또한 신혼부부 중 출산을 아직 시작하지 않은 가구도 분석에서 제외하였는데, 조사에 참여한 기간이 혼인 후 2년 내로 현재는 무자녀 상태이지만 가까운 시일에 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이 높은 가구는 제외

하였다. 또한 극빈층의 경우 출산 결정요인과 공적 이전에 대한 반응에 일반 가구의 패턴과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맞춤형 급여 수급 가구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와 같은 관측치들을 대상으로 연간 출산 여부 및 현재 자녀 수를 종속변수로, 임신 및 출산과 관련이 있는 가구와 개인의 특성을 설명변수로 하는 모형을 추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를 '현재 자녀 수'와 '연간 출산 여부'로 구분하였다. 이는 이론적으로 가구가 생애 출산할 자녀 수를 결정하는 과정과 특정 시점에 출산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출산 시기)이 구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자녀 수'에 대한 분석은 자녀의 질과 기타 재화 사이의 자원 배분 문제를, '연간 출산 여부'에 대한 분석은 노동시장 경력과 임금 변화, 양육비 부담 등 생애 현금흐름 제약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변수의 정의는 구체적으로 '연간 출산 여부'는 당해 추가된 가구원의 출생 연도가 조사 연도와 일치하고, 가구주와의 관계 변수로 부모·자녀 관계가 확인된 경우 당해 출산이 있었던 것($y=1$)으로 판단하였고, 당해 추가된 가구원이 없거나 추가된 가구원이 가구주와의 관계에서 부모·자녀 관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출산이 없었던 것($y=0$)으로 판단하였다. '현재 자녀 수'는 각 가구원의 가구주와의 관계 변수를 통해 계산된 가구 내 연도별 총자녀의 수를 의미한다.

설명변수에는 아내의 연령과 부부의 학력(교육연수) 및 임신을 계획할 당시의 근로소득(임금 및

[표 1] 변수의 정의

변수		설명
종속변수	연간 출산 여부 현재 자녀 수	당해 출산 시=1, 비출산 시 =0 당해 자녀 수(명)
설명변수	아내와 남편의 연령 아내와 남편의 학력 아내와 남편의 근로소득 1인당 사교육비 지자체 출산장려금 주거비 부담 기존 자녀 수	아내와 남편의 만나이(세) 아내와 남편의 교육 연수(년) 아내와 남편의 전전년도 세후 총연간근로소득(실질, 로그 변환) 연간 사교육비 지출 추정치(실질, 로그 변환) 당해 출산 시 받을 수 있는 출산장려금(실질, 로그 변환) 연간 가구 경상소득 대비(연간 월세+임대보증금의 10%)의 비중(%) 전년도 기준 자녀 수(명)

사업소득)과 같은 특성 변수들을 포함하였다. 개인 데이터에서 임금은 ‘작년 세후 총근로소득’을 의미한다. 분석 시에는 임신을 계획할 당시 소득의 영향이 파악되어야 하므로 한 해 전의 응답값, 즉 전전년도의 근로소득을 설명변수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사교육비 지출 수준, 임신 당시 가구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 기존 자녀 수, 지자체 출산장려금, 시간(연도) 고정효과를 포함하였다. 사교육비 지출은 자녀 1인당 기대되는 지출 금액으로, 노동패널에서 조사된 0세부터 고교생 이하 자녀에 대한 연간 사교육비 지출을 가구(경상)소득, 거주 지역, 조사 연도의 함수로 추정하여 근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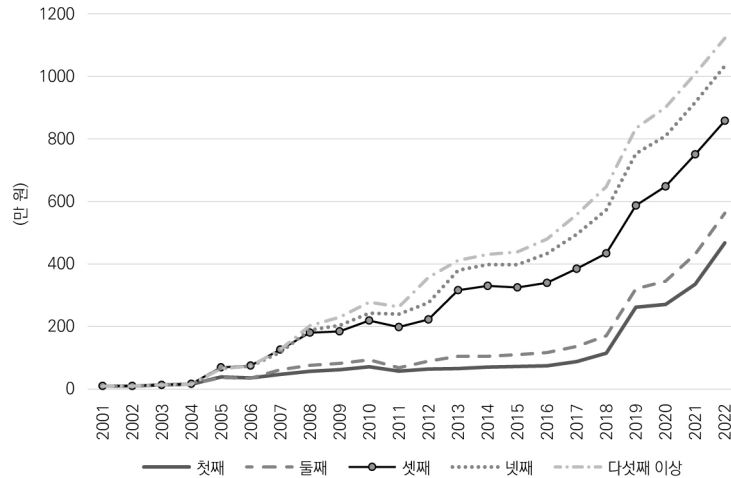
가구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은 가구의 연간 경상소득 대비 ‘(연간 월세 부담+임대보증금의 10%)’의 비율을 의미한다. 자가를 보유한 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0으로 간주하였고, 해당 변수가 자산 형성을 통한 가구의 생애 소비 평활화 차원에서, 혹은 거주 여건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출산에 유의한 영

향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편 출산 시점에 기대되는 지자체의 출산장려금은 자녀의 출생 순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 무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혼인 후 2년까지는 첫째 자녀 출산 시 받게 되는 금액을, 3년째부터는 둘째 자녀 출산 시 받게 되는 금액을, 5년째부터는 셋째 자녀 출산 시 받게 되는 금액을 의미한다. 자녀가 있으면서 다음 출생을 기다리고 있는 가구 또한 출생 순서에 따라 기대되는 지원 금액을 입력하였다. 즉 각 가구의 실제 출산장려금 수급 금액이 아니라 출산장려금의 ‘처치 자격’을 기준으로 변수를 구성하여 정책의 인과 효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각 지자체의 출산장려금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지자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을 참고하였다. 2001년부터 연도별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출산 이후 현금으로 지급하는 축하금, 장려금, 육아·양육지원금을 포함한다. 장려금은 지급 방식(일시, 분할)에 관계없이 지원 기간을 고려하여 출

[그림 1] 출생 순서별 지자체의 출산장려금(평균 금액) 추이

(단위: 만 원)



출처: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의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 및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생 순위별로 지급되는 총액을 활용하였다. 연도별 출산장려금의 지급 추이를 살펴보면(그림 1) 사업을 도입한 지역들에서 출생 순서별 지급 금액이 점

차 증가하고 있는데, 특별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첫째 자녀를 포함하여 지원 금액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2] 기초통계

변수	관측치 수	평균	표준편차
연간 출산 여부	9,386	0.05	0.22
아내 연령(세)	9,386	38.49	6.06
아내 학력(년)	9,379	13.36	2.15
남편 학력(년)	7,634	13.86	2.67
아내 연간 총근로소득(만 원)	8,820	1,089.24	1,650.32
남편 연간 총근로소득(만 원)	7,348	4,256.64	3,411.62
가구 경상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	9,162	7.91	13.96
총 자녀 수(명)	9,386	1.76	1.03
지자체 출산장려금(만 원)	9,386	189.41	410.70
ln(1인당 사교육비 추정치)	9,386	5.71	0.38

추정 방법은 패널 확률효과 및 고정효과 모형을 기준으로 하였다.²⁾ 근로소득, 사교육비, 출산장려금과 같은 가격 변수는 모두 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실질화한 후 로그 변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나. 분석 결과

가임기 유배우 여성의 연간 출산 여부에 대한 결정요인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표 3) 한 관측치 내(within)에서 독립변수 변화의 영향으로 해석되는

고정효과 모형을 기준으로, 모형에 관계없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당해 출산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나 제곱항의 계수는 음(-)으로 유의하여 여성의 생애에서 연령과 출산 여부 간에는 역U자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부(父)의 학력이 높아질수록 출산 확률이 높아지는 반면 모(母)의 학력은 영향이 없다. 출산장려금의 계수는 고정효과 모형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인다. 가구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은 추정 방법에 관계없이 출산 확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추정된다. 또한 기존 자녀 수가 많을수록 연간 출산 확률은 유의하게 감소할

[표 3] 연간 출산 여부 결정요인 분석 결과

	확률효과 모형		고정효과 모형	
아내 연령	-0.022***	(0.007)	0.043***	(0.009)
아내 연령 ²	0.000*	(0.000)	-0.001***	(0.000)
아내 학력	0.003	(0.003)	-0.005	(0.006)
남편 학력	0.005*	(0.003)	0.040**	(0.016)
ln(아내 근로소득)	0.000	(0.001)	-0.002	(0.001)
ln(남편 근로소득)	-0.001	(0.001)	-0.001	(0.001)
ln(사교육비)	-0.016	(0.014)	-0.028	(0.018)
ln(출산장려금)	0.000	(0.001)	0.003*	(0.001)
주거비 부담	-0.056**	(0.022)	-0.060**	(0.030)
기존 자녀 수	-0.181***	(0.010)	-0.407***	(0.020)
관측치 수	6,068		6,068	
가구 수	563		563	
Within R ²	0.323		0.375	

주: 모형에는 시간(연도) 더미가 포함됨. 괄호 안은 클러스터 표준오차; *** p<0.01, ** p<0.05, * p<0.1.

2) 분석 결과는 추정 방법상 내생성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인과관계 파악에 보다 적합한 고정효과 모형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다만 고정효과 모형은 학력과 같이 시간에 따른 변화가 거의 없는 변수에 대해서는 추정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비교를 위해 확률효과 모형의 결과도 함께 제시하였다.

[표 4] 현재 자녀 수 결정요인 분석 결과

	확률효과 모형		고정효과 모형	
아내 연령	0.183***	(0.023)	0.220***	(0.025)
아내 연령 ²	-0.002***	(0.000)	-0.003***	(0.000)
아내 학력	-0.009	(0.014)	-0.010	(0.019)
남편 학력	0.050***	(0.016)	0.077**	(0.033)
ln(아내 근로소득)	-0.011***	(0.002)	-0.011***	(0.002)
ln(남편 근로소득)	0.003	(0.002)	0.002	(0.002)
ln(사교육비)	-0.066**	(0.033)	-0.067**	(0.033)
ln(출산장려금)	0.009***	(0.003)	0.009***	(0.003)
주거비 부담	-0.103*	(0.058)	-0.099*	(0.059)
관측치 수	6,068		6,068	
가구 수	563		563	
Within R ²	0.263		0.264	

주: 모형에는 시간(연도) 더미가 포함됨. 괄호 안은 클러스터 표준오차; *** p<0.01, ** p<0.05, * p<0.1.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종속변수를 현재 자녀 수로 하는 경우 (표 4) 아내의 연령은 모든 모형에서 추가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로 역U자 형태를 보인다. 남편의 학력과 임신 전 아내의 임금 수준은 현재 자녀 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임신 전 임금 수준이 높아질수록 출산 확률이 낮아져 출산의 기회비용이 클수록 추가 출산의 가능성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가구의 주거비 부담 수준과 출산장려금의 영향은 모형과 관계없이 일관되게 유의한 결과를 보인다. 앞의 경우와 달리 현재 자녀 수를 종속 변수로 한 경우 사교육비는 출산장려금과 비교했을 때 계수의 크기가 약 7배 이상 크고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는 연간 출산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모델에서 기존 자녀 수에 따라 출산장려금의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 검토해 보았다(표 5). 이 경우 조사에 참여하기 시작할 시기에 출산이 모두 완료되어 자녀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가구가 무자녀 가구에 포함되어 추정 결과가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을 한층 더 줄여 보고자 여성의 연령을 45세 이하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기존 자녀 수가 1자녀 이하인지 여부(기준에 자녀가 없거나 한 명이면 1, 두 명 이상이면 0)에 대한 더미변수와 출산장려금의 상호작용항을 모형에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두 변수의 상호작용항 계수가 음(-)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장려금이 첫째~둘째 출산 단계 가구에서는 출산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 출산 장벽은 장려금보다 다른 구조적 요인(주거·고

[표 5] 연간 출산 여부 결정요인 분석 결과-기준 자녀 수에 따른 장려금의 효과 차이

	확률효과 모형		고정효과 모형	
1자녀 이하	0.146***	(0.010)	0.390***	(0.023)
ln(출산장려금)	0.002	(0.002)	0.005**	(0.002)
1자녀 이하×ln(출산장려금)	-0.006***	(0.002)	-0.005**	(0.002)
관측치 수	5,042		5,042	
가구 수	545		545	
Within R ²	0.162		0.203	

주: 모형에는 <표 3>의 독립변수들이 모두 포함됨. 괄호 안은 클러스터 표준오차; *** p<0.01, ** p<0.05, * p<0.1.

용 안정, 결혼·양육 환경 등)에 더 크게 제약될 가능성
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나가며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가구의 출산 결정은 단기적 상태가 아니라 장기 예산 전망에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경제적 생산성의 대리지표, 즉 출산 양육의 안정적 자원 기반으로 남성의 학력은 출산 확률과 현재 자녀 수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로 추정되었다. 반대로 여성의 임금 수준은 현재 자녀 수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미쳐 출산·양육의 기회비용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출산장려금은 자녀 양육 비용을 보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론적으로는 생애 소득·소비 전망을 변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클 경우에는 그 영향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 출산장려금은 2000년대 초반

부터 도입이 시작되어 시행 지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최근에 올수록 일시금보다는 분할 지급 방식, 즉 양육비 지원 형식으로 자녀당 지급되는 총금액이 높아지는 추이를 보인다. 분석 결과 출산장려금의 영향은 연간 출산 여부 및 당해 자녀 수를 종속변수로 한 분석에서 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다만 현재 한 자녀 혹은 무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두 자녀 이상을 가진 부부에 비해 출산장려금의 효과가 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특별히 현재 자녀 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에서 출산장려금의 탄력성은 사교육비 지출에 비해 7분의 1 정도로 작았고, 가구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은 두 가지 종속변수 모두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이었다. 즉 자녀 질의 향상을 위해 지출되는 사교육비나 주거 여건 등이 저출산 현상의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출산장려금의 상대적 기여도는 낮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임신·출산과 같이 장기적으로 생애 소득과 소비의 전반적 흐름을 고려해 의사

결정을 내리는 사안에 대해 단기의 소규모 무조건 부 현금 지급으로 행태를 변화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지자체의 출산장려금이 출산을 제고뿐 아니라 지역 인구 유입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한다고 해도 장려금으로는 자녀 양육 가구의 지속적 정주를 유도하지 못하고 효과가 단기에만 그치는 한계를 보이기도 한다.³⁾ 출산을 결심하는 데에는 부부가 자녀의 '질'에 대한 투자를 위해 지속적인 안정적인 자원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출산 장려 정책은 단기의 현금수당보다는 신혼부부 주거 지원이나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양육 환경 및 정주 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작업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문헌

강진규, 강경주. (2024. 4. 1.). 지방 '출산수당 퍼주기' 경쟁...출산율의 기적, 결국 도루묵. **한국경제신문**.
박소은, 최혜진, 이아영, 황안나, 심현보. (2024).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사업의 효과성 분석 연구(2013~2022년)**.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창우, 송헌재. (2014). 출산장려금 정책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추정. **응용경제**, 16(1), 5-34.
보건복지부. (2004).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
보건복지부. (2007). **2007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
보건복지부. (2008).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
보건복지부. (2009). **2009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

보건복지부. (2010).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
보건복지부. (2011).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
보건복지부. (2013).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
보건복지부. (2014).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
보건복지부. (2015). **2014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보건복지부. (2016). **2015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보건복지부. (2017). **2016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2018). **2017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2019). **2018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2019). **2019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2020).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2022).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2023).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2024).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2025). **2024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이유진, 김상현, 김나영. (2020). 출산장려금 지급수준과

3) 강진규, 강경주. (2024. 4. 1.). 지방 '출산수당 퍼주기' 경쟁...출산율의 기적, 결국 도루묵. 한국경제신문.

- 출산율의 관계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행정학보**, 54(4), 173-197.
- 이철희, 이소영. (2022). 현금지원이 유배우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급 사례로부터의 증거. **경제학연구**, 70(2), 61-93.
- 최혜진, 고경표, 정다은, 안승재, 김가희. (2023). **중앙 지방 간 유사 사회보장사업의 효과성 평가 - 지방 자치단체 수당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하솔임, 이아영, 박소은, 이상영, 안수인, 박금령. (2025). **개인의 행태변화 유도를 위한 현금지원정책의 효과와 시사점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Becker, G. (1993). *A treatise on the family*. Harvard university press.
- Fluchtmann, J., van Veen, V., & Adema, W. (2023). *Fertility, employment and family policy: A cross-country panel analysi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299). OECD Publishing. <https://doi.org/10.1787/326844f0-en>.
- Lain, S., Ford, J., Raynes-Greenow, C., Hadfield, R., Simpson, J., Morris, J., & Roberts, C. (2009). The impact of the Baby Bonus payment in New South Wales: who is having "one for the country"? *Medical Journal of Australia*, 190(5), 238-241.



Baby Bonus and Fertility Decisions: What Drives Parents' Choices?

Ha, Solleep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his article examines the effects of local government baby bonuses and other key factors on household fertility decisions from the perspective of lifetime consumption smoothing. The findings indicate that short-term cash transfers have only limited impact, as decisions about having children are shaped by long-term financial planning. More effective policies would therefore focus on structural measures—such as housing support for newlyweds and youth employment programs—rather than one-off cash allowances.